

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도시·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
【2022. 10. 21.(금) 10:00】

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·교통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2년 10월 21일

전문위원 배 금 택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2 - 92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2년 10월 5일
- 라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11일

2. 개정이유

-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안정성과 원활한 주차행정을 도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하여 주차장 공유사업의 추진 근거 신설
(안 제6조의6)

- 가.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
- 나.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요금 감면 혜택, 배정 우선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
- 다.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신설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주차장법」 제10조(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)
- 2)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2(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)
- 3)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6조(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)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 의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2. 9. 14. ~ 10. 4.) 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(기획예산과): 해당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(가족정책과): 원안 동의

5. 검토의견

가. 주요 개정내용

-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2 개정¹⁾ 사항을 반영하였고
-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장 공유사업의 근거 및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요금감면 혜택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공간을 간편하게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면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해 줄 스마트폰 어플 서비스 업체의 선정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.(안 제6조의6)

나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,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장 공유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임.
- 한정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전일사용을 지양하고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차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주택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불법·부정주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1) 제6조의2(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)

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(이하 이 항에서 “전용주차자동차”라 한다)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4. 16.>

- 다만, 주차장 공유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※ 서울시 주택가 공동주차장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계획 시달('22. 4. 7.)
- '24년부터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유의무화 미 도입 자치구 보조금 제외

참 고

주차구획 및 운용현황

□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현황

(2022. 10. 11 현재)

구분	면수			배정자 수		
	계	지정	일반	계	지정	일반
합계	3,422	650	2,762	3,205	615	2,590

□ 공유사업(민간협약) 운용

- 2020.02.: 모바일 앱 ‘모두의 주차장’ - (주)모두컴퍼니
- 2020.08.: ARS공유시스템 -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들
- ※ 방문주차제 운영: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상황실(3661-9252 ~ 3)

□ 주차구획 공유 현황

(2022. 10. 11 현재)

구분	거주자우선 주차면수	공유 현황		비고 (공유율)
		모두의 주차장 앱 (공유면수)	ARS(공유면수)	
2020년도	3,532	230	73	8.5%
2021년도	3,436	218	186	11.7%
2022년도	3,422	143	287	12.5%

□ 타구 현황

구분	자치구	비고
공유주차 의무화 시행	5개구 - 은평, 서대문, 양천, 강동, 노원	
타 자치구 공유주차 조례·규칙 개정 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례 개정: (16개구) 강남(20. 4. 10.) 강동('18.. 5. 9.), 강북('18. 5. 25.), 광진('14. 11. 12.), 구로('16. 11. 10.), 금천('19. 5. 9.), 노원('18. 10. 11.), 동대문('20. 12. 31.), 마포('18. 12. 27.), 성북('15. 9. 30.), 양천('17. 6. 9.), 용산('20. 12. 31.), 은평('17. 4. 27.), 종로('16. 11. 11.), 중구('19. 8. 9.), 중랑('16. 9. 29.) ○ 규칙 개정: (1개구) 서초(' 17. 6. 15) 	

※ 22개 구 공유주차구획 운영 중, 17개 구 공유주차 조례 개정 완료(은평 등 5개구 의무화)

□ 주차장법

제10조(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6. 8., 2013. 3. 23., 2016. 1. 19., 2020. 6. 9.>

1.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
 2.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
 3.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,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
-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10. 3. 22.]

□ 주차장법 시행규칙

제6조의2(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) ① 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 7. 27.>

1.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
 2. 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
 3.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
 4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
 5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
- 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(이하 이 항에서 “전용주차자동차”라 한다)

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4. 16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1. 4. 16.>

[전문개정 2010. 10. 29.]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
제6조(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)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인근주민이나 상근자를 위한 자동차(단,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확보 의무차량, 승합 16인승 이상 버스, 2.5톤 이상 화물차는 제외함) 및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.(개정 1999. 9.30, 2007.8.14, 2013.8.7)

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, 이용대상차량, 운영시간,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(개정 1997. 1. 8)